

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운전면허증에 신청을 통한 혈액형 수록 허용 등〉

■ 임오경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131호)

2024. 11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서 기 영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임오경의원 등 10인
2. 제안연월일 : 2024. 7. 23.
3. 회부연월일 : 2024. 7. 2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. 특히 RH-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.

위와 같은 이유로 「주민등록법」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.

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5조제3항 신설, 제87조의2제1항 등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운전자가 혈액형 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5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성명, 사진, 면허번호, 주소 등을 수록한다. 다만, 혈액형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.
③·④ (생략)	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.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	⑥ ----- -----제5항 까지에----- ----- ---제4항 또는 제5항에----- -----

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. 제87조의2(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)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<u>제4항까지</u>,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(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“운전면허증 발급”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,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제87조의2(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) ① ----- -----<u>제5항까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개정안은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중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 수혈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했던 구 「주민등록법」(2021. 7. 20. 개정

되어 2022. 1. 21. 시행되기 전의 것)이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이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의 반대 의견으로 폐지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⁾.

참고로 경찰청은 현재 운전면허증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5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45

1) 행정안전위원회,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. 2107130호) 검토보고.